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4. 8. 27.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8월 12일

나. 발 의 자: 전승관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4. 8.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전승관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촉이 어려운 경우 구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 당원 등의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72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시 민간 위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 참여를 허용하고 있어, 이에 규정을 정비하여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2조의2제2항에서 제72조의2제6항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정비 및 신설
 - 안 제72조의5는 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 신설
- 검토 결과
 - 안 제72조의2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를 인용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시 예외적으로 허용된 참여를 배제하여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임.
 - 안 제72조의5제2항은 기존 제척·회피 사항의 조문에 기피 사항을 신설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공정성을 강화함.
 -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자문심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7
----------	-----

발의연월일: 2024. 8. .

발의자: 전승관, 이규선, 유승용
김지연 의원(4인)

1. 제안이유

현행 윤리자문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촉이 어려운 경우 구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 당원 등의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윤리자문위원회 운영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심사(안 제51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자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제7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5(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및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심사기간) ① (생략)	제13조(심사기간) (현행 제1항과 같음)
제7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생략)	제7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 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각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이하 “행동강령 조례”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 원장과 위원이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 성과 임기는 행동강령 조례 제2 9조부터 제31조를 준용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 위원”이라 한다)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법조계·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 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 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자문위원 수의 10 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 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 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
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
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
한 심의 및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
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
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
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개

<신 설>

시된다.

제72조의5(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및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